

北韓의 法體制研究：刑法上의 財產犯罪에 관한 考察

姜 求 真
(서울大學校 法大 教授)

目 次

- | | |
|----------------|-----------------|
| I. 緒 言 | III. 國家財產 略取의 罪 |
| II. 個人財產에 對한 罪 | IV. 韓國 刑法과의 比較 |

I. 緒 言

소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刑法(이하 北韓刑法 또는 刑法이라고 한다)은 總 23章 全文 301條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第 2編 各則은 第64條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¹⁾ 北韓刑法 各則上의 犯罪는 ① 國家の 犯罪, ② 人身侵害에 관한 罪, ③ 公民의 財產侵害에 관한 罪, ④ 勞動法令 違反에 관한 罪, ⑤ 公法上 犯罪, ⑥ 經濟에 관한 罪, ⑦ 管理秩序侵害에 관한 罪, ⑧ 社會的 安全 및 人民保健侵害에 관한 罪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이 중 人身侵害에 관한 罪는 體系적으로 다시 ① 生命을 侵害하는 犯罪, ② 健康을 侵害하는 犯罪, ③ 生命·健康에 危險을 주는 其他의 犯罪, ④ 人身의 自由를 侵害하는 犯罪, ⑤ 性的 犯罪, ⑥ 名譽를 침해하는 犯罪로 區分되어 說明되어지고 있다.

本稿는 北韓刑法上 財產에 관한 罪를 考察할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 紙面이 許容하는 한도 안에서 大韓民國刑法과의 간단한 比較法의 考察도 시도하고자 한다. 北韓法에 對한 資料의 貧困 가운데에서, 本稿가 주로 依據한 文獻은 北韓 司法省의 機關誌인 民主司法 1959年 각 제 5호(40~44面), 제 6호(32~36面) 및 제 9호(30~34面)에 수록된 司法省法律學校(제 8호에서는

(1) 北韓刑法 全文에 관하여는 挙著, 『北韓法의 研究』(博英社, 1975), 297面이 하 參照.

法律大學으로 改稱됨) 法律講座 “國家社會 및 協同團體所有侵害에 關한 罪의 解說”(1), (2)와 “公民의 財產侵害에 關한 罪의 解說”이다. (이하에서는 각 “解說” (1), (2) 또는 “解說”로만 줄여 쓴다.)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北韓刑法上 犯罪의 成否에 關한一般的理論을 살피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약간 살피기로 한다. 또한 財產에 關한 罪를 考察함에 있어서도 北韓刑法上의 이와 같은一般的理論 내지 體系에 일반적으로 따르기로 한다.

貝林(Ernst Beling) 이후의 獨逸에 있어서 確立되고, 韓國에 있어서도 受容되고 있는 犯罪理論에 의하면, 犯罪의 成否는 構成要件該當性, 違法性 및 責任性이라고 하는 三重의 評價에 의하여 決定되어진다. 그런데 北韓에서는 犯罪의 成立 여부는 단지 構成要件該當性이라는 判斷으로서만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構成要件이란 北韓刑法의 見地에서 일정한 行爲를 犯罪로 特징짓는 客觀的 및 主觀的 表徵들의 總體라고 한다.⁽²⁾

그리하여 이들 表徵을 任意的인 것과 基本的・必須的인 것으로 나눈 다음 모든 犯罪構成要件은 基本的・必須的 構成要素로서 (1) 犯罪의 客體 (2) 犯罪構成要件의 客觀的 側面(또는 客觀的 方面) (3) 犯罪의 主體 (4) 犯罪構成要件의 主觀的 側面(또는 主觀的 方面)을 포함하고 있다고 說明한다.

나아가, 犯罪의 客體와 關련하여 북한刑法 제7조가 論하여지고 犯罪의 客觀的 側面으로서는 犯罪의 行爲, 犯罪의 結果, 因果關係 등이 포함되고, 犯罪의 主體의 分야에 있어서는 특히 責任能力者와 責任無能力者の 問題가 提起되고, 犯罪의 主觀的 側面으로서는 罪責論, 罪責形態(故意 및 過失) 및 錯誤論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犯罪構成要件의 任意的 要素는 다시 客觀的인 것과 主觀的인 것으로 나누이는 바, 前者로서는 犯罪의 對象, 犯罪遂行의 方法, 犯罪遂行의 時期・場所 및 環境 등이 지적되고 後者로서는 犯罪의 動機, 犯罪의 目的, 發作의 興奮 등이 提示되고 있다.

이와 같은 犯罪構成要件의 體系는 십히 卽物的이고 範疇論의이라고 할 수 있다.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는 法學方法論의 範疇의 體系로부터 目的論의 體系로 轉化하였음을 리스트(Franz von Liszt)로부터 貝林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다. 리스트가 行爲一不法一犯罪라고 하는 體系를 취하였

(2) 심현상, 『조선형법해설』(평양: 국립출판사, 1957), 108面. 이하 北韓刑法上의 構成要件에 關한 說明은 주로 本書에 依據한 것이다.

음에 반하여 벨링이 類型性(構成要件 實現)으로부터 出發하여 行爲概念을 그 가운데에 採入시킴으로써 그 轉化가 完成되었다고 한다.⁽³⁾

어떻든 北韓刑法上의 犯罪論이 主體·主觀的側面, 客體·客觀的側面이라고 하는 자못 感覺的區別에 의하여 體系化되고 違法과 責任이라고 하는 社會的·規範的性質에 의하여 體系化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것은 자못 範疇의 體系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겠다. 생각전대 北한에서 보는 것과 같은 犯罪論體系 내지 犯罪構成要件論은 종래 벨링 以前의 낡은 概念으로서 이미 近代의 獨逸刑法學에 의하여 克服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北한은 이와 같은 낡은 概念을 의연히 固守하고 있는 것이다.

II. 個人財產에 대한 罪

1. 窃盜

他人의 財產을 “隱密” 盜取하는 行爲로서 그 保護法益은 “解說”이 “[犯罪의] 客體는 他人의 個人所有”라고 하고⁽⁴⁾ 있는 점으로부터 미루어 보아 個人所有權이라고 하겠다. 占有가 獨立의 또는 제 2 차적인 保護法益인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行爲의 客體는 他人의 占有下에 있는 他人의 財產이다. 解說에 의하면 窃盜는 “他人의 占有를 侵害하면서 그 物件을 자기의 占有로 非法的으로 옮긴다는데서 자기자신의 占有下에 있는 他人의 財產을 그가 不法取得하는 橫額과 區別된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行爲의 客體인 “財產”이 “物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財產의 外延이 韓國刑法上 窃盜의 客體인 “財物”과 반드시 一致하는 것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解說은 他人의 占有란 그 財產에 대한 事實上의 支配狀態라고 한다.

行爲는 隱密한 方法에 의한 盗取이다. 여기에서 은밀한 方法이란 物件의 占有者가 意識하지 못할 때(예컨대 피해자가 없는 곳에서 혹은 수면중에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그러나 事實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의식하고 있다) 그 物件을 自己의 占有로 옮기는 것이라고 한다.

(3) G. Radbruch, “Zur Systematik der Verbrechenslehre,” Festgabe für Frank, Bd, I, SS. 160-162.

(4) “解說”, 30면.

實行의 着手時期는 “所與財產에 대한 他人의 事實의인支配를 물리침에
착수하는 순간부터이다. 예를 들어 盜難防止施設, 자물쇠, 울타리 등을
파괴함에 착수한 순간부터”라고 하는데 韓國判例가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 密接行爲說과 비교할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時點이 北韓刑法下에
서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判斷된다.

既述은 他人의 財產이 犯罪者의 占有로 移轉됨과 동시에 成立된다고 하는
데 이른바 移轉說을 취한것 같지는 않고, 韓國의 通說 判例인 取得說에 解說
은 만약 은밀히 盜取하기 시작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까닭에 공공연한
것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後述하는 略盜 혹은 强盜로 懲罰하여야 한다고 하
는데, 後者의 경우에는 韓國刑法上의 準強盜와 같은 규정이 北韓刑法에 있
어서는 없으므로 보통의 單純強盜가 될 것이다.

故意 이외의 이른바 不法領得의 意思가 있음을 요하는 것은 韓國에서의
判例・多數說의 立場과 같다고 여겨진다. 北韓刑法은 韓國刑法과 마찬가지
로 不法領得의 意思를 필요로 한다는 明文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解說
역시 不法領得意思라는 文字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窃盜의
故意는 他人의 占有下에 있는 他人의 財產을 은밀히 盗取한다는 것을 의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物件을 점유할 것을 직접 희망하는 데에 있다”라고
함으로써⁽⁵⁾, 결국 이른바 不法領得意思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즉
解說이 “他人이 占有하고 있는 他人의 財產을 破損할目的을 가지고 수행되
었거나, 適法的인 所有者나 利用者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수행되었거나, 일
시적으로 이용하고 돌려주기 위해서 수행되었거나(즉 이른바 使用窃盜의 경
우) 피해자를 떠한 事情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행되었다면 窃盜로는 되지 않
고 個人財產破損 혹은 不良者行爲로 되거나 전혀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⁶⁾ 이 점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刑罰 : ① 單純形態(제147조 1항 및 152조) — 2年이하의 懲役

② 加重形態

- (i) 客體에 의한 것 : 大量의 경우 또는 노력자의 소, 말 기타의 大家畜,
또는 엽총 이외의 銃砲 彈藥 — 5年이하의 懲役(제148조 1항, 151조 1항,
153조)

(5) “解說”, 31면.

(6) 上同

(ii) 기타의 경우 : 반복하여 또는 조직적 집단에 의하여 수행된 경우—8年
이하의 懲役(제148조 2 항, 151조 2 항)

2. 略盜

他人의 財物을 그 所有者, 使用者 혹은 管理者의 面前에서 公共然하게 盗取하는 行爲로서, 公共然한 盗取라는 점에서 隱密한 盗取를前提로 하는 窃取와 區別된다(제149조).

行爲는 他人이 占有하고 있는 他人의 財產을 公共然하게 非法的으로 自己의 占有를 끊기는 것으로서, 暴行 또는 脅迫을 가함이 없이 또는 暴行 또는 脅迫을 가하면서遂行될 수 있다. 解說은 여기에서 공공연한 行爲란 所有者나 使用者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피해자가 그 財產을 盗取당하는 것을 意識하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暴行이란 肉體的 強制로서, 公共然한 盗取의 목적으로 가해지는 刑法 제127조의 구타 또는 제124조 2 항의 輕傷害에 해당하는 정도의 人事上 侵害라고 하고 만약 폭행이 이와 같은 정도를 넘어 生命, 健康上 危險한 정도로 가해진 경우에는 強盜가 成立한다고 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脅迫이란 心理的 強制로서, 健康에 위험하지 않는 정도의 손해를 가할 것을 内容으로 한 것이며 지체없이 그 内容이 實現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위의 暴行・脅迫과 他人의 財產의 取得사이에는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刑罰 : ① 單純形態—3年이하의 징역(다만 勞力農民의 소, 가축의 脫取는 2년이하의 懲役)

② 加重形態—반복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혹은 조직적 집단에 의한 경우—7년이하의 懲役(제149조 2 항)

3. 強盜

強盜란 被害者에 대하여 生命・健康上 위험한 暴行 또는 脅迫을 가하면서 수행되는 他人의 財產에 대한 公共然한 盗取行爲이다. 保護法益은 個人所有權 및 人身의 自由라고 하겠다(제150조).

行爲의 客體는 窃盜・略盜의 경우와 같다.

行爲는 他人의 財產을 强奪하는 것이다. 즉 暴行 또는 脅迫으로써 財產의 占有者에 대하여 그 反抗을 抑制하고 그 財產을 强制的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暴行은 生命・健康上 위험한, 즉 死亡 또는 重傷害의 結果를 발생시킬 만큼의 強力한 侵害를 의미한다고 하며 피해자가 전혀 反抗을 할 수 없도록 결박을 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自由를 박탈하는 手法도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脅迫이란 生命・健康上 위험한 暴行을 加할 것으로 위협하는 強한 心理的 强制를 意味하며, 그 內容이 즉석에서, 또한 現實的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일정한 條件下에서 未來에 폭력을 가할 것으로 脅迫하는 것은 强盜의 構成要件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恐喝에 해당한다.

財產의 强奪과 폭행・脅迫사이에 因果關係가 필요한 것은 略盜의 경우와 같다.

故意는 健康上 위험한 肉體的 또는 精神的强制를 他人에게 加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러한 方法으로써 他人의 財產을 盜取할 것을 希望하는 데에 있다.

刑罰 : ① 單純形態—14年이하의 懲役

② 加重形態

- (i) 반복하여 또는 조칙적 짐 단에 의하여 수행되었거나 강도의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주면서 강도행위를 한 경우—2년 이상의 懲役(제150조 2항)
- (ii) 무기를 사용하여 수행된 강도—5년 이상의 懲役,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死刑(제150조 3항)

4. 恐喝

被害者の 人身에 暴行을 가하거나 그에 대한 不名譽스러운 事項을 公開하거나 財產을 破損할 것으로 脅迫하여 어떠한 財產上 利益이나 權利 또는 財產의 價値가 있는 勞務를 提供하게 하는 것이다(제159조).

行爲의 客體는 他의 所有에 속하는 他人의 物件으로서의 財產뿐만 아니라 財產上 權利 또는 利害, 財產上 價値있는 勞務를 포함한다고 한다.

行爲는 財產 또는 財產上 利益을 提供하도록 被害者에게 强要하는 것이다. 그 强要의 手段은 일정한 害惡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脅迫이다. 경우를 나누어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人身에 대한 暴行을 가할 것으로 霽迫하는 경우：人身에 대한 暴行이란 强盜나 略盜에서와 같이 生命・健康上 打擊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霽迫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폭행이 즉시에 실현되지 않고 未來에 實現될 것이라는 데서 略盜나 强盜와 區別된다고 한다.

2) 不名譽스러운 事項의 公開 또는 財產의 破損으로 霽迫하는 경우：즉 피해자가 비밀에 부치려는 사항을 공개할 것으로 협박하면서 일정한 財產을 제공하도록 強要하는 것이다.

刑罰은 5年以下의 懲役

5. 詐欺

欺瞞 또는 信任을 惡用하는 方法으로 他人의 財產 또는 財產上 利益을 非法的으로 取得하는 것이다(제158조).

犯罪의 客體：他人의 所有이며 直接的 侵害對象은 他人의 財產 및 財產上 權利 혹은 利益이라고 한다.

犯罪의 客觀的 側面：欺瞞 또는 信任을 惡用하여 他人의 財產을 詐斯하는 행위이다.

犯罪의 主體：刑事責任能力者

犯罪의 主觀的 側面：他人의 財產혹은 財產上 權利 또는 財產上 利益을 얻으려는 直接 故意가 요구된다고 한다.

刑罰：2年이하의 懲役 또는 1년이하의 教化勞動

6. 高利의 取得

金錢 기타 物件을 貸與하여 法定 最高利率을 초과하는 利子 또는 報酬를 받는 것이다(제162조). 여기에서 法定最高利率은 民事上의 年 5分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勤勞人民의 生活安定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利率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방의 실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확정하는 사항이라고 한다.

刑罰：① 單純形態—3年以下의 懲役

② 加重形態—職業의으로 범한 경우—5年以下의 懲役

7. 橫領

일정한 目的을 위하여 保管하고 있는 他人의 財物을 橫領하는 것이다(제 155조).

犯罪의 客體：他人의 所有이며 直接的인 侵害對象은 適法하게 犯罪人의 占有下에 넣어온 他人의 財產이다. 이 점에서 다른 略取犯과 區別된다고 한다. 제155조에서 말하는 一定한 目的이란 保管, 輸送, 修理, 使用 등의 목적을 의미하며 犯罪人의 占有下에 넣어온 것이란 所有權者의 支配狀態가 斷切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客觀的 側面：適法하게 自己의 占有下에 있는 他人의 財產을 자기 所有와 같이 非法的으로 처분하는, 즉 橫領하는 行爲이다.

橫領行爲는 抑留와 私的 用途에 둘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抑留란 保管하고 있는 他人의 財物을 橫領할 목적으로 해당한 期限內에 所有者 또는 그 物件의 權利者에게 返還하지 않는 경우이다. 반환해야 할 기한은 일반적으로 契約에 의해서 설정되며, 既遂時期는 所有者에게 財產을 반환할 의무 있는 그 期間이 到來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순간이라고 한다.

私的 用途에 둘린다는 것은 양도와 消費를 의미한다고 한다. 양도란 賣却, 典當, 贈與 등의 各樣의 形態가 있을 수 있고 財產의 消費는 먹어버리거나 입어버리는 등 직접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既遂時期는 그 讓渡 또는 消費된 순간이라고 한다.

犯罪의 主體：刑事責任能力者

犯罪의 主觀的 方面：自己의 占有下에 있는 財產이 他人의 財產이라는 것을 알면서 自己所有와 같이 處分할 것을 희망하는 直接 故意로 수행된다고 한다.

刑罰：2年이하의 懲役

8. 拾得物 橫領

犯罪의 客體는 所有權 혹은 그 物件의 適法的 占有者的 支配로부터 우연히 떨어져 나온(분실된) 他人의 財產이다. 犯罪의 客觀的 側面은 이러한 財產을 원소유자에게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지 않고 자기가 抑留 또는 消費, 讓渡하는 行爲이다. 國家財產을 拾得한 者가 그것을 國家財產인줄 알면서 自己의 私的 用途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個人財產에 대한拾得物橫領이 아니

라 國家財產 略取罪가 成立한다고 한다.

刑罰 : 3個月 以下의 教化勞動 또는 1,000원(舊貨幣) 以下의 罰金

9. 個人財產破損

個人의 財物을 故意로 破損하는 것이다.

犯罪의 客體 : 公民의 個人所有로서 直接的인 侵害對象은 他人의 財產일 수도 있고 例外的인 경우에는 自己의 財產일 수도 있다.

犯罪의 客觀的 方面 : 個人財產을 破壞・損傷하는 行爲이다. 財產의 破損은 적극적인 행위(즉 作爲)로서도 가능하며, 소극적인 行爲(즉 不作爲)로서도 가능하다.

犯罪의 主體 : 刑事責任能力者

犯罪의 主觀的 方面 : 直接 혹은 間接故意로 수행된다. 재산의 破損行爲는 過失로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서는 刑事責任에까지 引入하지 아니하고 民事的인 節次에 의해서 혹은 社會道德的인 規範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한다.

刑罰 : ① 單純形態—2年이하의 懲役 또는 教化勞動

② 加重形態

(i) 放火, 溢水 등의 方法으로 遂行된 경우—7年이하의 懲役

(ii) 破損의 結果 사람을 死亡하게 하였거나 사회적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2年以上의 懲役. 특히 情狀이 重한 경우에는 死刑

III. 國家財產 略取의 罪

1. 概念과 一般的 構成要件⁽⁷⁾

國家財產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의 略取(以下 國家財產略取라고만 한다)란 國家財產을 그것이 自己支配下에 있거나 他人의支配下에 있거나에 관계없이 自己 또는 他人의 所有로 만들 目的으로 故意의으로 非法(=不法)取得하는 행위라고 한다.

(1) 犯罪의 客體 :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의 所有, 즉 社會主義的 所有의 財產이다.

정치사전(平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소유”란 다

(7) “解說(1)”, 40-41면.

음과 같이 說明되고 있다.

생산 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社會的 所有, 社會主義的 所有는 방대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좌취에서 해방된 勤勞者들의 集團勞動에 의하여 그들 자신의 物質・文化的 福利를 體系의 으로 向上시키며 社會主義經濟를 建設하는 데 복무하게 된다. 社會主義的 所有는 社會主義的 生產關係의 기초를 이루며 여기에는 全人民的 所有와 協同的 所有의 두 形態가 있다. 國家的, 全人民的 所有는 勤勞者, 農民을 비롯한 全體人民이 社會主義國家를 통하여 生產의 物質的 要素들을 所有하는 形態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全人民的 所有는 重要產業의 國有化 法令에 의하여 처음으로 創設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여 北朝鮮에서는 日本帝國主義者들이 朝鮮人民의 피와 땀으로 이 땅위에 建設하여 놓은 모든 공장, 광산, 발전소들과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문화기관 등이 그 唯一한 合法的 主人인 朝鮮人民의 所有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1권, p. 63).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진행된 重要產業의 國有化에 의하여 國家的・全人民的 所有가 처음으로 創設되었으며 그것은 첫날부터 人民經濟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全人民的 所有의 強化를 위한 黨의 方針을 받들고 투쟁하는 勤勞者들의 創造的 勞動에 의하여 急速히 擴大・공고화되었다.

協同的 所有는 個別的 協同經營者에서 그 成員들이 集體的으로 生產手段과 生產物들을 所有하는 形態이다. 協同的 所有는 주로 農業에서 支配하게 되며 여기에는 協同農場이 경작하는 土地, 協同農場 所有의 農機械 및 農機具, 經營建物과 構築物, 運輸手段, 文化施設 및 協同農場에서 生產된 生產物 등이 이에 속한다. 工業 및 水產業分野에서 조직된 生產協同組合의 一切 財產이 또한 協同的 所有에 속한다. 農業에서 協同的 所有가 支配하게 되는 것은 農村이 都市에 비하여 技術, 文化, 思想分野에서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金日成 수령은 協同的 所有의 全人民的 所有에로의 轉換의 必要性과 그 實現의 具體的 方途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全面的이고도 科學的인 解答을 주었다. 金日成 수령은 協同的 所有를 全人民的 所有로 들어 올리기 위하여서는 農村에서 技術 文化思

想革命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키며 協同的 所有를 發展시키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임없이 높이며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계를 강화하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완성시켜 나아가는 확고한 입장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國家財產略取에 있어서 그客體인 財產이란 經濟的 및 物質的 價值를 지닌 物件을 의미한다고 한다. 生產手段, 生產物, 商品, 金錢 등은 물론 장래에 있어서 物質的 利益을 얻을 수 있는 근거로 되는 有價證券, 證書類를 포함한다(예컨대 車票, 빠스표, 우표 수입인지 등). 그러나 비록 國家財產이긴 하지만 그것이 經濟的 또는 物質的 價值를 지니지 않는 財產은 國家財產略取의 對象으로 될 수 없다고 한다(예컨대 1959년 2월의 貨幣交換(=改革) 후에無效로 된 北朝鮮中央銀行券, 期日이 넘은 車票등). 이 경우 그 物件의 價值가 있는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法院의 裁量에 의한다고 한다.

國家機關이나 社會協同團體에 保管되어 있거나 委託되어 있는 個人所有의 財產도 國家財產略取의 對象으로 한다(예컨대 철도수송중에 있는 個人所有의 소화물, 國營委託販賣所에 委託된 個人所有의 物件 등). 왜냐하면 國家機關이나 社會協同團體에서 보관 또는 위탁받았던 個人의 物件을 盜難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물건 값을 보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흥미있는 理論의 展開라고 하겠다.

(2) 犯罪의 客觀的 方面 :自己 또는 他人의 占有下에 있는 國家財產을 不法하게 他人의 所有로 또는 自己의 所有로 轉換시키는 행위이다. 國家財產을 不法하게 轉換시키는 행위로서는 窃盜, 略盜, 强盜, 詐欺, 橫領, 讓渡, 職權濫用 혹은 文書偽造의 方法등의 다양한 方法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國家財產 略取의 既遂時期는 國家의 占有로부터 벗어나서 犯罪等의 犯罪로 넘어가는 때인바, 國家財產의 橫領에 있어서는 自己의 所有와 같이 消費하거나 抑留한 때라고 한다.

(3) 犯罪의 主觀的 方面 :直接故意가 要求된다. 즉 國家財產을 위법하게取得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自己의 所有로 혹은 自己의 所有와 같이 處分 또는 管理할 것을 希望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國家財產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個人財產이라고 생각하면서 略取한 경우에는 비록 國家財產이었다 할지라도 國家財產略取로서는 懲罰할 수는 없고 個人財產略

取의 “未遂”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未遂라고 하는지는 疑問이다.

그러나 自己가 위법하게 取得한 財產이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 財產이라는 것을 완전하게는 의식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리라고 意識하면서 위법하게 취득한 경우, 즉 韓國刑法學上 논의되는 未必的 故意가 있는 경우에는 國家財產略取가 成立된다고 한다.

그리고 國家財產略取에 있어서는 반드시 國家財產을 自己의 所有로 만들거나 혹은 自己의 所有와 같이 管理・處分하려는 目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國家財產略取罪에 있어서 韓國刑法上 窃盜罪에 관하여 多數說이 要求하고 있는 것과 같은 故意이외에 不法領得意思를 必要로 한다는趣旨로 풀이된다.

(4) 犯罪의 主體 : 公民이나 公務員을 不問하고 刑事責任能力者이면 충분하다. 다만 각個의 條文이 特定한 사람만을 犯罪의 主體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예컨대, 제103조 Ⅲ, 제107조).

2. 國家財產略取의 形態

(1) 사소한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의 窃取

私人으로서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의 창고, 기관, 화차, 선박 및 기타 公共的 利用의 保管場所에서 사소한 財物을 절취하는 것이다(제103조 1 항). 解說(1)은 제103조 1 항이 國家財產의 窃取만을 규정하고 있고, 國家財產의 橫領, 詐欺에 관하여 제105조 1 항 및 제108조가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사소한 國家財產을 略盜, 恐喝 혹은 强盜한 경우에는 어떻게 懿律할 것인가라는 問題를 提起한 다음, 그 해결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리고 있다.

이 問題는 個人財產을 侵害하는 犯罰들인 刑法 제149조(個人財產略盜罪), 제159조(個人財產恐喝罪), 제150조(個人財產強盜罪)등의 刑罰이 刑法 제103조 1 항의 刑罰과 同一하거나 혹은 보다 더 重하게 規定되어 있다는 점을 考慮할 때 사소한 國家財產의 略盜, 恐喝, 强盜行爲를 一般的으로 刑法 제103조 1 항에는 懿律할 수 없다.

어떻든 이 犯罪에서 말하는 國家財產의 범위의 사소성은 具體的인 事件의 事情에 따라 法院이 確定하여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다만 “大量”인가 “小量”인가의 問題의 解決基準은 量的 標準(數量 또는 價格)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侵害된 財產의 用途의 重要性 등에도 비추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金額 또는 數量上으로 보면 적은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貴重한 物件인 경우에는 “大量”的 國家財產이라고 볼 수 있다는 論理를 展開한다.

行爲의 主體인 私人은 제10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다 “國家社會協同團體의 倉庫 및 機關에 출입한 지위에 있는 者 또는 그를 保護하는 者”(예하면 창고에 출입하는 勞務者 혹은 창고경비원 등)와 區別되는 概念으로서, 이러한 者를 除外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한다.

行爲의 場所로서의 其他 公共的 利用의 保管場所란 例示的인 의미밖에 없고 어느 場所에 있는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國家財產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형벌 : 3년이하의 징역

이 犯罪에 대한 加重形態로서는 ① 반복하여 또는 여러번 혹은 他人과 통모하여 범한 경우——5년이하의 懲役 ② 국가, 社會團體, 協同團體의 창고 및 기관에出入할 地位에 있는 者 또는 그를 保護하는 者가 그 창고 또는 기관에서 절취한 경우——5년이하의 懲役 ③ 반복하여 또는 조직적 집단에 의하여 ②의 범죄를 범한 경우——8년이하의 懲役의 세 가지가 있다.

(2) 國家財產의 橫領

國家機關 또는 公共機關의 委任에 의하여 義務를 實行하는 者 또는 公務員이 自己의 職務上 또한 義務實行上 占有하고 있는 金錢, 기타의 財物을 橫領하는 것이다(제105조).

“犯罪의 主觀的 方面은 直接故意가 있어야 한다. 즉 適法的으로 委任된 國家財產을 自己의 所有로 만들거나 自己의 所有와 같이 處分하려는目的이 있어야 하며 또 그를 直接 希望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目的이 없이 破損하거나 盜難, 紛失당하거나 物品이 不足되는 경우에는 橫領으로 擬律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韓國刑法上 橫領罪와 같이 不法領得意思를 肤요로 하는 領得罪로 罰악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예컨대 適法하게 占有된 國家財產을 “一時的으로 流用”한 경우, 명백히 원상대로 반환을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면 無罪가 아니라一般的으로 職權濫用으로 의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다.

刑罰 : 8년이하의 懲役

특히 重要하거나 多量의 國家財物에 관하여 이 犯罪가 범하여진 加重形態(제105조 2항)는 5년이상의 懲役 및 全部의 財產沒收.

(3) 國家財產 詐欺

國家機關 또는 公共機關에 損害를 주는 詐欺行爲를 하는 것이다(제108조).

刑罰 : 5년이하의 懲役

解說(1)은 “사소한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 財產을 詐欺한 경우에는 詐欺를 직접 규정한 刑法 제108조에 의를할 것이며 大量의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 財產을 詐欺한 경우에는 刑法 제108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刑法 제104조(만약에 특히 大量의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 財產을 詐欺한 경우에는 응당 제106조에 摘律할 것임)에 의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刑法 제108조는 사소한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을 詐欺했거나 大量의 財產을 詐欺했거나에는 關係 없이 詐欺一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刑法 제104조의 刑罰과 제108조의 刑罰間에는 不均衡性이 存在하여 또한 刑法 제104조에서는 略取(이 것은 窃盜, 略盜, 強盜, 詐欺, 橫領등을 다 全攝하는 概念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大量의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의 詐欺는 응당 刑法 제104조에 의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刑法 제108조는 사소한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 財產에 대한 詐欺를 한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다”라고 한다.

(4) 大量의 國家財產의 略取

私人으로서 大量의 國家財產, 社會團體財產 또는 協同團體財產을 略取하는 것이다.

略取라 함은 自己 또는 他人의支配下에 있는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을 自己 또는 他人의 所有로 만들 목적으로 故意的으로 위법하게 取得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에는 窃盜, 略盜, 恐喝, 強盜, 橫領 등의 개념이 다 全攝된다.

解說(1)에 의하면 “사소한 國家・社會 및 協同團體 財產의 略盜나 恐喝도 刑法 제104조에 의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刑法 제149조(個人財產略盜罪), 제159조(個人財產恐喝罪)와 刑罰均衡上으로 보아서도 그렇지만 특히는 우리가 모든 犯罪를 평가하고 의를함에 있어서 主觀的 및 客觀的 表徵들을 總括的으로 考察・評價하여 주요하게는 革命의 利益의 見地에서 考察・評價해야 하는만큼 그와 같이 의를하는 것이 合目的的이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解釋은 罪刑法定主義原則에 의한 類推解釋禁止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近代刑法의 原理에 비추어 볼 때 매우 疑問이 아닐 수 없다.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의 大量의 詐欺에 관하여는 本條가 적용되고,

다만 大量的 橫領의 경우에는 제105조 2항의 규정이 있으므로 同條項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극히 위험한 方法으로 수행되는 强盜는 사소한 것이나 大量의인 것이나 할 것 없이 個人財產強盜를 규정하고 있는 刑法 제150조와의 刑罰均衡上 刑法 제104조에 擬律할 수 없고, 다만 극히 사소하거나 또 악랄하지 않은 强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제104조에 擬律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刑罰 : ① 單純形態(제 1 항) — 10년이하의 懲役 및 全部 또는一部의 財產沒收

② 加重形態(제 2 항) : 반복하여 또는 조직적 집단에 의하여 범한 경우 — 15년이하의 懲役 또는一部의 財產沒收

(5) 特히 大量의인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 財產의 略取

國家, 社會團體, 協同團體의 倉庫, 機關企業所에서 또는 鐵道運輸 혹은 水上運輸途中의 貨物을 連續的으로 또는 組織的 集團에 의하여 또는 特히 大量의으로 略取하는 것이다(제106조).

解說(2)에 의하면 “이 犯罪는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所有에 대한 가장 嚴重한 侵害이기 때문에 이 犯罪者들에 대해서는 특히 준엄하게 처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수행된다 해도 고조된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손해를 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반국가적 범죄에 뭇지 않게 증오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⁸⁾ 위 제106조의 解釋論을 다음과 같이 展開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⁹⁾

“…本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組織的 集團이나 連續的이라는 表徵도 본리를 구성하는데는 特別한 意義가 없다. 즉 어떠한 場所에서 어떠한 條件을 略取했든지 혹은 組織的 集團에 의해서 略取했거나 單獨의으로 略取했거나 連續的으로 略取했거나 一回에 거쳐서 略取했거나에는 관계없이 特히 大量의으로 略取하면 된다……때문에 刑法 제106조에서는 「特히 大量의」이라는 表徵만이 特別한 意義를 가진다. 刑法 제106조는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등 모든 國家, 社會, 協同團體 財產略取의 加重的 形態로 看做된다.”

(8) “解說(2)”, 32면.

(9) 上同

刑罰：死刑 및 全部의 財產沒收

強盜의 方法으로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 財產을 略取한 경우에 法條適用을如何히 할 것인가에 관하여, “解說(2)”는 여러 가지 見解가 對立함을 紹介하면서, 그 스스로는 刑法 제106조에 擬律함이妥當하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6) 特別한 形態의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의 略取

國家의, 社會의인 機關이나 企業所의 主管者가 去來相對者와 通謀하여 그機關 또는 企業所에 不利한 契約을 締結하는 方法으로써 國家財產 또는 社會團體財產을 略取하는 것이다(제107조).

刑罰：1年이상의 懲役 및 全部 또는 一部의 財產沒收

(7)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의 破損

A. 國家財產의 故意的 破損

國家財產, 社會團體財產 또는 協同團體財產을 故意로 破損하는 것이다.

犯罪의 客體：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 略取의 客體와 同一하다.

犯罪의 客觀的 方面：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 財產을 破損하는 行爲이다.破損이란 破壞 또는 損傷을 의미하는 바, 破壞하는 것은 그 財產이 가지는本來의 經濟的 및 社會的 價值를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損傷이란 그 財產의 經濟的 및 社會的 價值를 부분적으로 減少시키거나 削손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기계나 도구를 파괴하거나 방화하거나 폭파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로써 수행될 수도 있으며 국영목장의 역우나 가축의 사양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료를 제때에 공급하지 않거나 치료예방사업을 제때에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위로도 수행될 수 있다고 한다.

犯罪의 主體：刑事責任能力者

犯罪의 主觀的 方面：故意가 요구된다. 解說(2)가 “만약 國家財產을 略取하기 위해서 破損했다면 破損에 대한 責任은 구태여 다시 지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범죄에서 주관적 方면을 옳게 확정하는 것은 지극히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強調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反國家의 故意로써 수행되었다면 반국가적 범죄의 해당조문에 의를 할 것이며 국가, 사회 및 협동단체 재산약취의 故意가 있을 때에는 약취의 해당조문에 의를 해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론上 不法領得意思와 區別되는 損壞의 故意를 요구함에 틀림없다.

刑罰：① 單純形態—3年以下의 징역 ② 加重形態—반복하여, 또는 죄를

범하여 생산행정을 정지 혹은 중단시키거나 국가에 대하여 심중한 손해를 준 경우—8年이하의 懲役 및 全部 또는 一部의 財產沒收

關聯問題：刑法 제164조 2항이 “放火 또는 溢水, 기타 公共의 危險을 발생하게 하는 手段을 사용하여”個人財產을 故意로 破損한 경우에는 7年이하의 懲役을 규정하고 같은 3항이 “前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亡에 이르게 하였거나 社會的 災害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2年이상의 懲役, 특히 情狀이 重한 경우에는 死刑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제109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問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解說(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 ⁽¹⁰⁾ 심히 의문이다.

“그렇지만 現行 實務實踐에서는 별로 問題되는 것은 없다. 즉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을 故意의으로 放火하거나 公共의 危險性을 發生하게 하는 手段으로 사람을 死亡케 하였거나 社會的 災害를 發生시키는 破損行為는 일반적으로 反國家的 目的을 가지고 遂行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反國家的 犯罪의 해당조문에 의를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없다.”

B. 貸借한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의 濫用・損傷

國家財產 또는 社會團體財產을 貸借한 者가 그 財產을 濫用・損傷하는 것이다(제110조).

刑罰：懲役 8年

C.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의 過失의 破損

農業機械 및 其他의 財產을 複심할 정도로 조잡하게 취급한 結果에 그를 損傷하는 것이다(제111조).

“農業用 機械 및 其他의 財產”을 解釋함에 있어서 解說(2)는 “農業과 關聯된 財產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을 다 包括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함으로써 이 條文을 國家, 社會 및 協同團體財產의 過失의 破損의一般的 規定으로 인정함이 妥當할 것이다”라고 한다.⁽¹¹⁾ 주목할 만한 解釋이다.

刑罰：① 單純形態는 1年이하의 教化勞動 ② 여러번 범한자 또는 重大한 손해를 일으킨 경우는 加重形態로서 3年이하의 懲役

(10) “解說(2)”, 36면.

(11) 上同

IV. 韓國刑法과의 比較

(1) 北韓刑法은 韓國刑法과는 달리, 財產犯을 이른바 社會主義的 所有에 대한 罪와 個人所有에 대한 罪로 區分하여 각기 相異한 罪의 章에 규정하고 있다. 즉 前者는 第15章 國家所有, 社會 및 協同團體所有侵害에 관한 罪로서, 後者는 第17章 公民의 財產侵害에 관한 罪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犯罪의 種類 및 規定方式

① 韓國刑法下에서는 窃盜가 公然하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窃盜罪를 구성하지만, 北韓刑法下에서는 公共然한 窃盜를 略盜로 규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窃盜로 규정하고 있다.

② 窃盜의 客體에 관하여 韓國刑法 제46조는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北韓刑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③ 韓國刑法上 財產犯에 관하여는 親族相盜例의 규정(제328조)이 있지만 북한형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④ 韓國刑法에는 他人의 權利 또는 占有의 目적이 된 自己物體에 관한 財產犯罪인 權利行使妨害의 罪의 章(제37장)이 있음에 반하여 북한형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條項이 없다.

⑤ 韓國刑法에는 紊物罪의 규정이 있지만 北韓刑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⑥ 韓國刑法上 背任이 처벌됨에 반하여 북한형법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⑦ 북한형법상 국가기관에 대한 不利한 契約의 締結자체가 罪로 규정되고 있음에 반하여(제107조) 한국형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북한형법상 法定最高利率, 超過利子, 取得行爲 자체가 罪임에 반하여(제162) 한국형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構成要件의 規定方法

北韓刑法은 財產犯罪에 관하여 構成要件의 個別化 특히 單純類型을 기준으로 하여 加重類型으로 細分化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반하여, 韓國刑法은 카주이스틱(Kasuistic)한 列舉的 規定이라기 보다는 簡單하고도 廣幅한 構成要件의 規定方法에 立脚하고 있다.

(4) 法定刑의 比較

韓國刑法上의 財產犯罪에 관한 構成要件과 北韓刑法上의 그것이 嚴格하게 對應하지 않는 까닭에 比較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全體的으로 觀察할 때, 북한형법상 個人財產에 대한 犯罪는 韓國刑法上의 財產犯罪보다도 그 法定刑이 輕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國家財產에 대한 犯罪에 관하여는 韓國刑法에서보다 重한 法定刑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韓 國 刑 法	北 韓 刑 法
竊盜—6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	① 個人財產 竊盜—2년 또는 5년 以下の 징역 略盜—3年以下의 징역 ② 國家財產 竊盜—3년 이하 또는 10년이하의 징역 해당조항 없음
夜間住居侵入竊盜 特殊竊盜—1년이상 10년이하의 懲役	個人財產—4년 또는 8년 이하의 징역 國家財產—8년이하의 징역
常習犯—그 罪에 定한 刑의 $\frac{1}{2}$ 까지 加重	個人財產—4년 또는 8년이하의 징역 國家財產—8년 以下の 징역
強盜—3年以上의 懲役 特殊強盜—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 準強盜—위의 例에 의한다. 略取強盜—強盜로서 論한다.	14년이하의 懲役 2년 以上 또는 5년 以上的 징역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死刑
強盜傷害, 致傷—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 強盜殺人, 致死—死刑 또는 無期懲役 強盜強姦—無期 또는 10년 以上的 懲役 海上強盜—① 無期 또는 7年以上 ② 無期 또는 10년 以上 ③ 死刑 또는 無期懲役	해당조항 없음
常習犯—無期 또는 10년 以上的 懲役 詐欺—10년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	國家財產의 경우—5년 以下の 징역 個人財產의 경우—2년 以下의 懲役 또는 1년 이하의 教化勞動
準詐欺—10년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 不當利得—3년 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 恐喝—10년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	國家財產의 경우—10년 以下の 징역 및 全部 또는一部의 財產沒收 個人財產의 경우—5년 이하의 懲役
常習犯—위各罪에 정한 刑의 $\frac{1}{2}$ 까지 加重 橫領・背任—5년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	國家財產—8년 以下 또는 5年이상의 징역 個人財產—3년 以下の 징역

業務上 橫領・背任—10年 以下の懲役 또는 200만원 以下の罰金	
背任收贈罪—① 5年 以下の懲役 또는 200 만원 以下の罰金 ② 2年 以下の懲役 또는 100 만원 以下の罰金	
占有離脱物—橫領 1年 以下の懲役 또는 40 만원 以下の罰金	3個月 以下の 教化勞動 또는 1000원 以下の 의 罰金
財物損壞—3年 이하의 징역 또는 600,000원 이하의 罰金	國家財產의 경우—3年 以下 또는 8年 以下 의 징역 및 全部 또는 一 부의 재산 물수
公益建造物損壞	個人財產의 경우—① 1년 이하의 教化勞動 ② 7년 이하의 징역
重損壞—① 生命 또는 身體에 대한 위험 발 생시—1年 以上 또는 10年 以下 의 징역 ② 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傷害 罪와 비교하여 重한 刑으로 처단	2年 이상의 징역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死刑
特殊損壞	